

#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김준영<sup>1)</sup>·장재호<sup>2)</sup>·김강호<sup>3)</sup>·박상현<sup>4)</sup>

## 01 서론

### 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

-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급과 결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이 조그마한 과업(tasks)으로 쪼개져서 중개 또는 거래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음(ILO, 2021)
  - 디지털 플랫폼이란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동 서비스의 거래가 조정되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정의됨(Pesole et al., 2018)
-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기반형(local based)’ 플랫폼은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웹기반형(web-based)’ 플랫폼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음(ILO, 2021)
  - 특히 2020년 2월에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을 가속화시켰고,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하는 플랫폼종사자(platform worker)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2) 플랫폼종사자의 증가

- 플랫폼종사자는 ‘플랫폼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유급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고객과 연결되는 고용 형태’(OECD, 2019)로 정의됨

1)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ibangin@keis.or.kr)

2)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jhjang@keis.or.kr)

3)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kkh@keis.or.kr)

4)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연구원 (shpark03@keis.or.kr)

-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것은 이들 중 다수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와 같이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임
  - 플랫폼은 수입의 불안정, 고객평가에 대한 높은 의존, 플랫폼과 플랫폼종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훈련으로 부터의 배제,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부재 등 고용의 질과 관련된 부정적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음(Urzi et al., 2020)

### 3) 본고의 목적

- 플랫폼종사자들 간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양하며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도 상이하므로, 플랫폼종사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유형별 규모를 파악하고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임
- 본 고의 목적은 2021년 8월에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플랫폼종사자 규모 추정과 근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임

## 02 플랫폼종사자의 식별

### 1) 플랫폼종사자 정의

- 본 연구는 2020년 7월에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 일자리TF’에서 제시된 네 가지의 플랫폼노동 정의에 근거하여 플랫폼종사자를 식별함
  - 이 네 가지 조건은 (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소개, 중개, 알선)되는 것이 서비스(용역) 또는 가상재화일 것, (2)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일거리(일감)를 구할 것, (3) 디지털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해야 할 것, (4)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감(일거리)이 특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임

### 2)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식별

-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어플)이나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얻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2,197천명<sup>6)</sup>을 ‘광의의 플랫폼종사자’로 분류함

5) 본 조사의 내용은 부록을 참고할 것

6) 이 글에서 제시된 모든 취업자 수는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7) 이 중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사람의 노동을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거래하거나 자산을 임대하는 ‘전자상거래’와 ‘임대업’은 제외하였음. 본 조사에서 이 두 유형에 해당하는 종사자 규모는 약 4만명임

- 이 2,197천명은 위의 일자리위원회가 제시한 네 가지 플랫폼종사자 정의(식별 기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15~69세 취업자(25,885천명)의 8.5%에 해당하는 규모임

### 3)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식별

-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일감의 중개에 개입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를 추산할 필요가 있음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제시한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준을 적용하여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를 식별함
  - 즉,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1) 일의 수행방식이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일감(일거리)을 받고 온라인으로 고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서 일감을 받으나 서비스는 직접 고객을 만나 제공’한다고 응답하였고, (2) 보수지급 방식이 ‘귀하를 고용한 고용주가 직접 지급한다’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이 고객에게 돈을 받아 귀하에게 지급하거나 고객이 귀하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응답한 사례 중에서, 3) 일을 얻는 방식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정한다(즉, 본인 선택권이 없음)’라고 응답한 사례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되었음
- 한편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2,197천명 중에서 일하는 방식이 오직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구한 일자리에 고용주(사장)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다’라고 응답한 1,454천명은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에서 제외하였음
  - 이 1,454천명이 이용한 플랫폼은 알바XX, 알바X, 잡코XX, 워크X, 사람X 등 구인구직알선앱/사이트가 압도적인 다수이며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직종별 협회의 웹사이트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 앱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된 것으로 전통적인 취업 알선이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며 플랫폼이 ‘알고리즘적 방식으로 거래를 조율했다’라고 보기 어려움
  - 알바XX 등 구인구직알선앱/사이트는 구인공고를 단순 공지하는 ‘게시판’ 역할을 할 뿐이며 플랫폼종사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역할은 하지 않아, 이 구인·구직 알선 앱에게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정계약 의무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본 조사에서 정의된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15~69세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661천명임

## 우리나라 플랫폼종사자 규모

(단위: 천 명, %)

	15~69세 취업자 수(2021년 5월 기준)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인원(천명)	25,885	2,197	661
비율(%)	(100.0)	(8.5)	(2.6)

## 03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특징

## 1)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인적 특성

- 플랫폼종사자는 여자, 청년층, 수도권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53.5%, 여자가 46.5%로 나타나, 15-69세 취업자전체의 남녀 비율(각각 57.2%와 42.8%)과 비교하여 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별로 보면 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10대와 20대 청년층 비율이 각각 3.2%와 34.0%로 15-69세 취업자전체(10대가 0.8%, 20대가 14.3%)에 비해 두 배이상 높으나 40대 이상 중년·고령 종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플랫폼종사자는 여자, 청년층, 수도권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음

표 1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인적 특성(천명, %)

(단위: 천 명, %)

구분	광의 플랫폼 종사자		15-69세 취업자전체		
	종사자 수	비율	종사자 수	비율	
전체	2,197	100.0	25,885	100.0	
성	남자	1,175	53.5	14,807	57.2
	여자	1,022	46.5	11,078	42.8
연령	10대(15-19세)	71	3.2	196	0.8
	20대	748	34.0	3,712	14.3
	30대	467	21.2	5,291	20.4
	40대	412	18.8	6,327	24.4
	50대	348	15.8	6,447	24.9
	60세이상	152	6.9	3,911	15.1
거주지역	서울권	525	23.9	5,022	19.4
	경인권	788	35.9	8,519	32.9
	충청권	191	8.7	2,751	10.6
	전라권	166	7.6	2,374	9.2
	경상권	466	21.2	6,123	23.7
	강원제주권	61	2.8	1,096	4.2

| 주 | 15-69세 취업자전체의 출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임

- 거주지역별로 보면 광의 플랫폼종사자의 약 60%가 서울과 경인권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15-69세 취업자전체의 수도권 거주 비율인 52.3%에 비해 7%p 이상 높음

## 2) 직종별 분포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배달·배송·운전(29.9%) > 음식조리·접객·판매(23.7%) > 전문서비스(9.9%) > 사무보조·경비(8.6%) >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5.7%)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음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배달·배송·운전 관련 직종이 76.0%로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서 전문서비스(8.1%),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4.8%), 가사·청소·돌봄(4.3%)의 순임

표 2 플랫폼종사자의 직종 분포

(단위: 천 명, %)

순위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직종	종사자 수	비율	직종	종사자 수	비율
1	배달·배송·운전	658	29.9	배달·배송·운전	502	76.0
2	음식조리·접객·판매	520	23.7	전문서비스(통·번역·강사·상담 등)	53	8.1
3	전문서비스(통·번역·강사·상담 등)	218	9.9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31	4.8
4	사무보조·경비	188	8.6	가사·청소·돌봄	28	4.3
5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124	5.7	미술 등 창작활동	19	2.9
6	가사·청소·돌봄	116	5.3	IT 관련 서비스	14	2.1
7	미용·세탁·장례 등 개인서비스	66	3.0	미용·세탁·장례 등 개인서비스	7	1.1
8	IT 관련 서비스	49	2.2	음식조리·접객·판매	3	0.4
	전체	2,197	100.0	전체	661	100.0

###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직종 분포의 남녀 간 비교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남자는 절반에 가까운 47.5%가 배달·배송·운전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고, 이어서 음식조리·접객·판매(15.5%), 사무보조·경비(8.5%), 전문서비스(6.0%)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음
- 여자의 경우 가장 많은 33.1%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이어서 전문서비스(14.5%), 가사·청소·돌봄(10.1%), 배달·배송·운전(9.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플랫폼종사자는 남녀 간 직종 분리가 비교적 뚜렷함

표 3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남녀 간 직종 분포

(단위: 천 명, %)

순위	남자			여자		
	직종	종사자수	비율	직종	종사자수	비율
1	배달·배송·운전	558	47.5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338	33.1
2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182	15.5	전문서비스(통·번역·강사·상담 등)	148	14.5
3	사무보조·경비	100	8.5	가사·청소·돌봄 관련	103	10.1
4	전문서비스	70	6.0	배달·배송·운전	100	9.8
5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41	3.5	사무보조·경비	88	8.6
6	IT 관련 서비스	32	2.7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83	8.1
7	미용·세탁·장례 등 개인서비스	29	2.5	미용·세탁·장례 등 개인서비스	37	3.6
8	창작활동	18	1.6	창작활동	27	2.6
	남자 전체	1,175	100.0	여자 전체	1,022	100.0

## 04 플랫폼종사자 근무환경: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 가)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주·부업 유형별 규모

#### 1)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주·부업 유형 구분

- 본 장에서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플랫폼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검토하고자 함<sup>8)</sup>
- 본 연구는 ‘플랫폼노동에 참여하여 얻는 소득의 규모’와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플랫폼종사자를 ‘주업형’, ‘부업형’ 및 ‘간헐적 참가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함
  - ‘주업형’은 플랫폼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이며 플랫폼노동에 주당 평균 20시간이상 참여하는 자로, ‘부업형’은 플랫폼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총수입의 25%~50%이며 플랫폼노동에 주당 평균 10시간~20시간 참여하는 자로, ‘간헐적 참가형’은 플랫폼노동으로 버는 수입이 총수입의 25% 미만이며 플랫폼노동에 주당 평균 10시간 미만 참여하는 자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표5>에 나타나 있음
-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면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주업형’은 312천명(15~69세 취업자의 1.2%), ‘부업형’은 261천명(15~69세 취업자의 1.0%)이며 ‘간헐적 참가형’은 88천명(15~69세 취업자의 0.3%)임

표 4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주·부업 유형 구분

	플랫폼노동 주당 10시간 미만	플랫폼노동 주당 10~19시간	플랫폼노동 주당 20시간 이상	무응답, 결측
총소득 중에서 플랫폼노동 참여로 얻는 수입 비중 25% 미만	간헐적 참가형	부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총소득 중에서 플랫폼노동 참여로 얻는 수입 비중 25~50%	부업형	부업형	주업형	부업형
총소득 중에서 플랫폼노동 참여로 얻는 수입 비중 50% 이상	부업형	주업형	주업형	주업형
무응답, 결측	간헐적 참가형	부업형	주업형	제외

| 주 | 주·부업 유형은 Urzi et al.(2020)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

#### 2)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직종별 분포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모두 배달·배송·운전 관련 직종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으며, 특히 ‘주업형’이 82.3%로 가장 높음
- ‘간헐적 참가형’ 중에서도 배달·배송·운전 관련 직종 비율이 75.9%로 가장 높아, 4명 중에서 3명은 퇴근 후나 주말에 몇 시간 정도 배달·배송·운전 관련 일을 하면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알바XX, 알바X, 사람X, 워크X 등)은 전통적인 일자리 알선기능이 단지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므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조건은 비플랫폼종사자의 일반적인 근로조건과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아서 별도의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배달·배송·운전 관련 직종에 이어서 '주업형'은 가사·청소·돌봄 관련(4.6%), 전문서비스(3.3%)의 순으로, '부업형'은 전문서비스(14.5%),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5.9%) 순으로, '간헐적 참가형'은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8.5%), 전문서비스(6.2%) 순으로 종사자 비율이 높음

표 5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주·부업 유형별 직종 분포

순위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직종	비율	직종	비율	직종	비율
1	배달·배송·운전	82.3	배달·배송·운전	68.5	배달·배송·운전	75.9
2	가사·청소·돌봄 관련	4.6	전문서비스 (통·번역·강사·상담 등)	14.5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8.5
3	전문서비스 (통·번역·강사·상담 등)	3.3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5.9	전문서비스 (통·번역·강사·상담 등)	6.2
4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2.8	가사·청소·돌봄 관련	5.3	창작활동	5.2
5	IT 관련 서비스	2.7	IT 관련 서비스	1.2	IT 관련 서비스	2.9

## 나) 수입과 노동시간

### 1) 노동일과 노동시간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월평균 플랫폼 일거리 참여 노동일수는 '주업형' 플랫폼종사자는 21.9일, '부업형'과 '간헐적 참여형'은 각각 10.3일과 5.4일임  
- 하루평균 플랫폼 일거리 참여 노동시간은 '주업형'은 8.9시간, '부업형'과 '간헐적 참여형'은 각각 4.5시간과 3.1시간임
- 이를 주당 평균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주업형'은 주당 평균 46.3시간 플랫폼노동 일을 하고 있고, '부업형'과 '간헐적 참여형'은 주당 평균 플랫폼 일거리 참여 노동시간이 각각 10.9시간과 3.6시간임

표 6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주·부업유형별 플랫폼 일거리 참여 노동일수와 노동시간

(단위: 일, 시간)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월평균 노동일수(일)	21.9	10.3	5.4
일 평균 노동시간(시간)	8.9	4.5	3.1
주당 평균 노동시간(시간)	46.3	10.9	3.6

↓ 주 | 응답자 중에서 월평균 노동일수가 30일 이상이며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24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제외

## 2) 직종별 월평균 노동일과 주당 노동시간

- 직종별 플랫폼 일거리 참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주업형’은 개인서비스업(49.6시간)과 배달·배송·운전(48.4시간)이 비교적 길고 전문서비스업(29.3시간)과 가사·청소·돌봄(34.3시간)이 비교적 짧음
  - ‘부업형’과 ‘간헐적 참가형’ 역시 플랫폼 일거리 참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배달·배송·운전 직종이 각각 11.7시간과 4.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표 7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주·부업유형별 플랫폼 일거리 참여 노동일수와 노동시간

(단위: 일, 시간)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월평균 노동일수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노동일수	주당 노동시간	월평균 노동일수	주당 노동시간
배달·배송·운전	22.1	48.4	10.5	11.7	5.8	4.0
가사·청소·돌봄	22.3	34.3	10.6	8.8	-	-
전문서비스 (통 번역·강사·상담 등)	19.5	29.3	10.1	8.6	3.2	1.4
미용·세탁등 개인서비스	22.6	49.6	5.0	4.8	2.0	1.0
IT 관련 서비스	19.9	38.1	4.0	4.0	4.8	3.6
미술 등 창작활동	18.4	34.4	8.7	10.5	3.7	2.9
데이터입력 등 단순 작업	20.2	38.2	9.5	10.0	3.8	2.4

## 3) 수입

- 주·부업 유형별로 보면 월평균 총소득(A)은 ‘간헐적 참가형’이 307.3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업형’은 218.5만원이며 ‘부업형’은 140.0만원으로 가장 적음
  - 플랫폼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B)은 ‘주업형’이 192.3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업형’이 74.3만원, ‘간헐적 참가형’이 22.7만원으로 가장 적음
- 플랫폼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업형’이 88.0%, ‘부업형’은 53.1%<sup>9)</sup>이나 ‘간헐적 참가형’은 7.4%에 불과
  - ‘간헐적 참가형’은 비교적 양호한 수입을 버는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취미나 여가 활용 수준으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 플랫폼노동을 통해 버는 수입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업형’이 50% 이상인 것은, 이들 중에 플랫폼노동 참여를 통해 버는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플랫폼노동 참여 시간이 주당 10시간 미만인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표4 참조)

표 8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수입

(단위: 만 원)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총소득(A)	218.5	140.0	307.3
플랫폼노동 참여를 통해서 번 수입(B)	192.3	74.3	22.7
B/A	88.0%	53.1%	7.4%

주: 응답자 중에서 월평균 노동일수가 30일 이상이며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24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제외

## 다) 사회보험 가입

### 1) 고용보험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29.1%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50.4%는 미가입, 20.4%는 모른다고 응답
  - 고용보험 가입 경로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였다는 응답이 12.2%로 가장 높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하였다는 응답이 8.8%, 자영업자 임의가입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 비율은 8.1%임
- 고용보험 가입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간헐적 참가형'이 46.3%로 가장 높음
  - '간헐적 참가형' 중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29.1%로 가장 높고,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입'한 비율은 7.4% 임
- '주업형'과 '부업형'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6.9%와 25.9%이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와 9.1%로 낮음

표 9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전체
가입	26.9	25.9	46.3	29.1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가입	8.9	9.1	7.4	8.8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 가입	9.1	10.2	29.1	12.2
기타 (자영업자 임의가입 등)	8.9	6.6	9.8	8.1
미가입	58.2	48.4	29.1	50.4
모름	14.9	25.7	24.6	2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 2) 산재보험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0.1%, 45.8%는 미가입, 24.2%는 모른다고 응답
  - 산재보험 가입 경로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가입’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 비율이 각각 15.1%와 15.0%로 비슷
-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비율은 ‘간헐적 참가형’이 43.6%로 가장 높음
  - ‘간헐적 참가형’의 경우 산재보험 역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한 비율이 30.3%로 ‘현재 플랫폼을 통한 가입’ 비율(13.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 산재보험 가입률은 ‘주업형’이 27.7%, ‘부업형’의 28.3%로 두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없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한 가입’ 비율은 ‘부업형’이 16.6%로 ‘주업형’의 14.2%에 비해 근소하고 높음

표 10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상태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전체
<b>가입</b>	27.7	28.3	43.6	30.1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 가입	14.2	16.6	13.2	15.0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이외의 다른 회사를 통해 가입	13.5	11.7	30.3	15.1
<b>미가입</b>	52.6	43.6	28.1	45.8
<b>모름</b>	19.7	28.1	28.4	24.2
<b>전체</b>	100.0	100.0	100.0	100.0

## 라) 계약관계, 비용 및 업무 수행에서 경험한 어려움

### 1) 플랫폼 가입 시 가입비나 등록비

- 플랫폼에 가입할 때 가입비나 등록비를 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임
  - 이 중 처음 가입할 때 한 번만 가입비나 등록비를 낸다고 응답한 비율은 27.9%(21천명)이고 가입비는 평균 약 32천원임
  - 한편 플랫폼에 주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비용을 낸다는 응답은 72.1%(54천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28천원임

표 11 플랫폼 가입 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용

(단위: 천 명, %, 만 원)

	협의를 플랫폼종사자				
	처음 1회만 납부		(부정기 납부)		
	종사자 수	금액	종사자 수	금액	
	75(11.3)	21[27.9]	32	54[72.1]	28

| 주 | [ ] 는 가입비 또는 등록비가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의 비율(% )임

## 2) 플랫폼 가입 시 계약 형태

- 플랫폼과 서비스 내용, 수수료, 수입, 계약기간의 갱신 및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 체결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많음
  - 이어서 앱/웹사이트 회원가입 시에 '이용계약서(회원 약관 등)를 작성하였다'가 28.2%, '업무 관련 지침(가이드)에 동의하였다'가 23.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음
  - 한편,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5.5%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는 거의 없음은 것으로 나타남
- 주·부업 유형별로 보면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라는 응답 비율은 '부업형'이 33.8%로 가장 높고, '주업형'도 25.2%로 비교적 높음

표 12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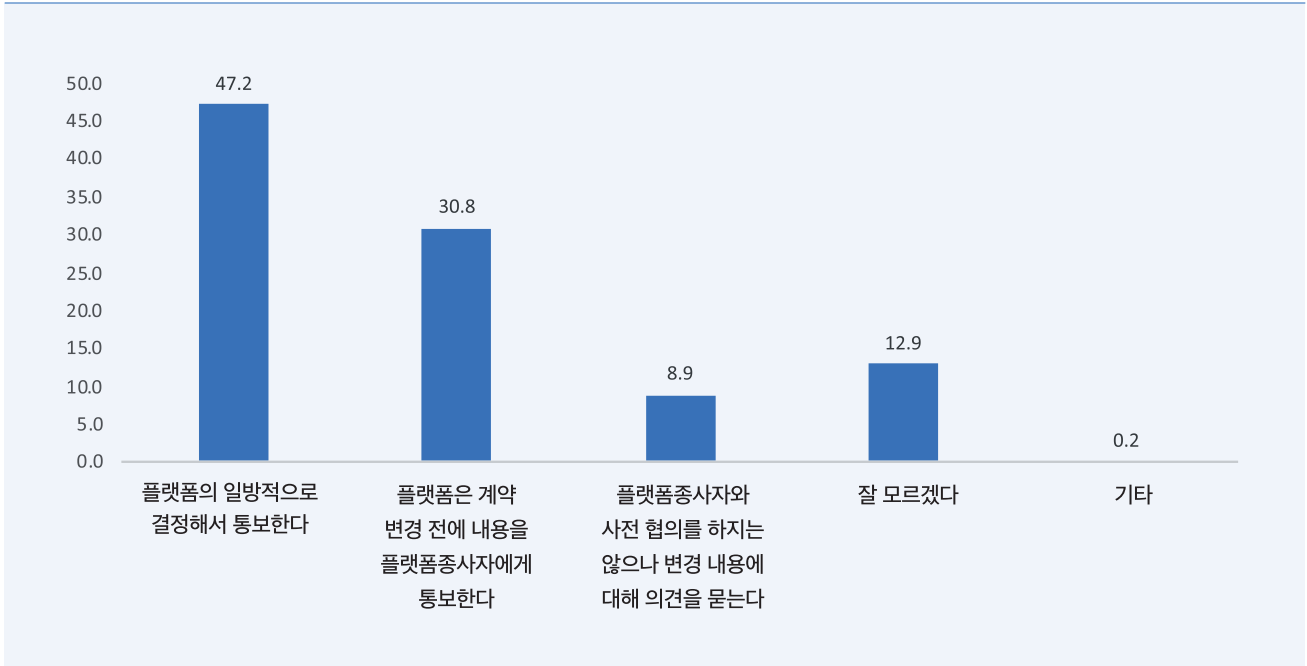
(단위: %)

계약 형태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전체
이용계약서(회원 약관 등)	30.9	24.9	28.5	28.2
업무 관련 지침(가이드)	24.0	23.2	21.5	23.3
표준계약서	6.2	4.5	6.5	5.5
근로계약서	0.0	0.2	0.0	0.1
기타	0.7	0.3	0.0	0.5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25.2	33.8	24.3	28.5
잘 모르겠다	13.0	13.1	19.2	13.8

- 계약 내용의 변경 시의 절차와 협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47.2%의 플랫폼종사자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한다'고 응답하여 계약 및 약관의 변경이 플랫폼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이 계약 내용의 변경 전에 플랫폼종사자에게 통보한다'는 30.8%, '플랫폼종사자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나 계약 변경 전에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8.9%임

그림 1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계약내용 변경 시 절차와 협의 내용

(단위: %)



[ 주 | 계약형태로 이용계약서, 업무관련 지침(가이드), 표준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기타로 응답한 자 중에서의 비율임

### 3) 플랫폼이 정한 규정과 규칙의 존재 여부와 위반 시의 불이익

- 플랫폼 업체가 정한 업무 관련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는 응답은 41.0%
  - 이 중에서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앱 차단 또는 일감 배당을 제한한다’가 8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계약 또는 등록의 강제 해지’가 58.8%임

표 13 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업무 관련 규정·규칙 존재 여부 및 위반 시 불이익의 내용

(단위: %)

		주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	전체
있음		45.5	35.0	43.0	41.0
규정·규칙 위반 시 불이익	불이익이 없음	[13.2]	[12.6]	[15.6]	[13.3]
	일시적 앱 차단 혹은 일감 배당 제한 등	[82.5]	[84.2]	[84.8]	[83.4]
	계약/등록 강제 해지	[66.5]	[49.3]	[52.6]	[58.8]
	수당/수수료 삭감	[31.7]	[29.2]	[25.6]	[30.0]

[ 주 | ]는 규정·규칙이 있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의 비율(% )임

-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으로 '수행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했다'가 22.0%로 가장 많음
  -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사전 협의 없이 수당이나 보수가 삭감되었다'(16.0%) 등도 비교적 응답 비율이 높음
  -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플랫폼 업체가 중재나 조정을 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계약이나 등록 강제 해지'(65.8%), '성희롱/성추행'(61.6%) 외에는 50% 미만으로 낮음

표 14 협의의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노동을 하면서 경험한 어려움

(단위: 천 명, %)

어려움 유형	경험 있음			
			중재·조정 경험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수행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지 못함	145	22.0	61	(41.7)
계약 이외 업무 배당	100	15.2	46	(45.9)
사전 협의 없는 수당/보수 삭감	105	16.0	48	(45.4)
앱/웹 이용 일시 정지 또는 차단	101	15.2	49	(48.8)
계약/등록 강제 해지	54	8.2	36	(65.8)
폭언 등 모욕적 언행	85	12.8	36	(42.3)
성희롱/성추행	39	5.9	24	(61.6)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 부담	120	18.1	61	(50.8)

| 주 | ( )는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중에서의 비율(%임)

## 05 요약과 시사점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개 또는 조정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 간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과 수준이 다양하며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는 방식도 상이하므로, 플랫폼종사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8월에 플랫폼종사자의 유형별 규모를 추정하고 근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플랫폼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무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자리(일거리, 일감)를 구하는 자로 정의된 ‘광의의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15~69세 취업자의 8.5%에 해당하는 2,197천명으로 추산되었음
- ‘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플랫폼이 거래를 조율하고,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며,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일자리가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는 15~69세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661천명임
- ‘협의의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4명 중 3명은 운전·배달·배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직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한편 전문서비스, IT관련, 창작활동처럼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본 연구는 플랫폼노동에 참여하여 버는 수입의 비중과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플랫폼종사자를 ‘전업형’, ‘부업형’, ‘간헐적 참가형’으로 구분하여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비교하였음
  - 본 조사를 통해서 플랫폼종사자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플랫폼노동 참가 형태, 수입, 근로조건, 수행직무 등에서 매우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세 유형 중에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플랫폼노동에 참여하는 ‘간헐적 참가형’이 총수입이나 사회보험 가입률 등 근로조건이 가장 양호함

- 한편, 수입 대부분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 '전업형'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30% 수준으로 낮고 평균소득도 '간헐적 참가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플랫폼종사자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플랫폼종사자 내부의 이질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플랫폼노동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고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업형'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장지연(2020), 플랫폼노동자의 규모와 특징, 고용노동브리프 제 104호, 한국노동연구원.

Cook, C., Diamond, R., Hall, J., List, J.A, Oyer, P. 2018), 'The Gender Earnings Gap in the Gig Economy: Evidence from over a Million Rideshare Drivers, NBER Working Paper, Number 24,732.

De Stefano, V. (2016),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On-demand work, crowd work and labo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7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ILO(2021),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21: The rol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in transforming the world of work,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OECD (2019),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OECD Publishing, Paris.

Urzi B., C., Pesole, A., Fernández-Macías, E.(2020),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OECD Publishing, Paris.

## 부록 | 「광의 플랫폼종사자 규모추정과 근무실태」 조사

### 조사개요

-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15~69세이며 표본은 성, 연령집단(10세), 17개 시도지역을 할당 변수로 설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50,001 명의 사례가 조사되었음
- 본 조사의 모집단은 「주민등록연앙인구」(2021년 5월)의 15~69세 전 국민이다. 조사목표 표본 수인 5만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집단 층별 비율과 비례하도록 층별 목표표본 수를 할당하여 조사하였음
- 조사는 아래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음
  - 첫 번째 단계: 두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연구진 협의를 통해서 조사방법과 설문 초안이 마련되었음(2021년 3월~6월)
  - 두 번째 단계: 본 조사 전에 시범 조사(pilot test)가 세 차례 실시하여 1단계에서 마련된 설문 초안의 오류를 점검하고 문항을 개선하여 최종 설문을 확정하였음(2021년 7월)
  - 세 번째 단계: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조사된 사례 수는 전국 15~69세인 50,001명임(2021년 8월)
  - 네 번째 단계: 본조사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조사 등 보완조사가 실시되었음(2021년 9월)

### 조사 내용

- 조사 설문은 취업자의 인적특성을 묻는 문항, 플랫폼종사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항, 플랫폼종사자의 근로환경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 플랫폼종사자 식별을 위한 문항은 지난 3개월 동안 플랫폼(앱/웹사이트) 이용 경험 여부, 주로 이용한 플랫폼, 플랫폼을 이용한 활동 내용, 플랫폼 일자리의 계약 및 보수 형태, 플랫폼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 등임
- 플랫폼종사자 근무환경 관련 문항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의 결정 방식, 플랫폼 이용 시 가입비 유무 및 이용료, 플랫폼의 계약 내용과 계약 형태, 수입과 노동시간, 플랫폼업체가 정한 규정·규칙 내용과 위반시 불이익 내용,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경로, 플랫폼노동 수행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 등임(표1)

표 1 실태조사 주요 내용

구분	조사항목
I. 인적특성	연령(만 나이), 거주지역, 성별, 학력
II. 플랫폼종사자 식별 관련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한 경제활동 경험 여부</li> <li>• 이용한 플랫폼의 명칭</li> <li>• 플랫폼을 이용한 일의 내용</li> <li>• 플랫폼 일자리의 일의 형태</li> <li>• 플랫폼 일자리의 계약 방식</li> <li>• 플랫폼 일자리의 보수 형태</li> <li>• 플랫폼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li> </ul>
III. 플랫폼종사자 근로환경 관련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의 가격 결정 방식</li> <li>• 플랫폼 가입 시 가입비 또는 등록비 유무</li> <li>• 플랫폼과 작성한 계약서 종류 및 계약 내용 변경 절차 방법</li> <li>• 플랫폼 이용 시 이용료와 중개수수료 지불 여부</li> <li>• 플랫폼이 정한 규정·규칙 내용과 위반 시 불이익 내용</li> <li>• 플랫폼 일자리 외 오프라인 일 병행 여부, 오프라인 일자리 내용</li> <li>• 월평균 총수입, 플랫폼 일자리를 통해 번 수입</li> <li>• 플랫폼 일자리의 월평균 노동 일수, 하루평균 노동시간 및 건수</li> <li>• 플랫폼 일자리 수행 시 겪은 애로사항 및 플랫폼 업체의 중재, 해결을 위해 노력 여부</li> <li>•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경로</li> </ul>